



제336회 정례회
2014. 12. 1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임병운 의원 외 6명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4년 12월 1일
- 회부일자 : 2014년 12월 2일

3. 개정이유

- 가. 현행 조례 상,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허가가 취소된 자는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규제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임. 따라서 이를 삭제하여 장애인, 노인 등의 경제활동 재기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 나. 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하여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내용

- 가. 장애 명칭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용어로 수정(안 제6조)
- 정신지체장애인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 나. 설치허가 취소자의 해지일 이후 설치 신청 금지조항 삭제(안 제7조)
- 다. 사용료 부과·징수기준과 방법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도록 수정(안 제8조)
- 라. 매점·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조항 삭제 및 법령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한 것으로 법리적, 내용적 타당하다고 사료됨.
-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에서는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허가가 취소된 자는 다시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존의 ‘정신지체장애인’을 ‘지적장애인’으로 수정하고, 자폐성장아인, 정신장애인’을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 사용료 부과·징수기준과 방법에 대한 근거 조항에서 기존 조례에는 해당 기관의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자체 규정에 의해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도록 수정함.
- 또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12.21. 공포·시행)의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행정 업무상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매점·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 양식을 수정하여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 하였음.